

#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김경훈 의원 외 14명
- 나. 의안번호: 제2710호
- 다. 발의일자: 2025. 5. 23.
- 라. 회부일자: 2025. 5. 29.

### 2. 제 안 사 유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은 유치원과 초·중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유치원이나 초·중등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는 경우 교내에서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, 교육활동 중 차량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, 일부 학교는 학교시설 미개방에 따른 운영사업자 위탁운영 등이 곤란한 측면도 존재함.
- 이에 유치원과 초·중등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제외(안 제7조의3 제1항제1호 단서 신설).

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전시설 개방 유·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위탁 운영 곤란 등의 사유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(이하 “전용주차구역”) 설치 의무 대상에서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(이하 “학교”) 등을 제외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는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2026년 1월 28일까지 설치<sup>1)</sup>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서울시 내 학교 수는 2,117개교<sup>2)</sup>이고 이 중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은 533개교(25%)이나 설치를 완료한 학교는 8%인 43개교에 그치고 있으며, 대부분(89%, 477개교)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설치를 유예하고 있음.

설치 실적이 부진한 사유로는 학교 개방에 따른 문제를 들고 있는데, 예를 들어 전용주차구역 설치로 인해 학교를 개방하면 외부인 무단침입, 교통사고 및 차량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개방하지 않으면 전용주차구역 운영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.

#### 〈서울시 유치원·초중등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현황('25.1.28.기준)〉

(단위: 개교, 기)

구분	대상 학교 (개교)	전체 충전시설(급속 포함)		급속 충전기	
		의무 설치	기설치	의무 설치	기설치
합계	533	862	142	5	12
이행 완료	43	73	93	-	2
설치 면제	6	15	0	-	-
설치 유예	477	762	47	5	10
미이행	7	12	2	-	-

1)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면수: 신축 5%, 기축 2% 이상('22.1.28. 기준)

2) 서울시 유치원·초중등학교 학교 수 현황: 2,117개교(서울특별시 교육청, '24.10.1. 기준)

- 본 조례안은 학교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일부 공감할 수 있으나, 이는 현행 조례의 제정 목적인 전기차의 보급 확대 및 충전 편의성 제고와 상충하는바, 다른 형태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상위법인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외부 개방 의무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시행령에 따른 연구기관과 출자·출연기관으로 한정되고 학교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

즉, 학교 충전시설은 자체적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내부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이를 통해 개방에 따른 문제는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,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관련 문제는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아울러 설치 유예 기한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설치 의무 대상 학교 중 대부분(90%, 486개교)이 설치 유예 또는 미이행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, 소관 부서인 친환경차량과는 기한 전까지 설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